

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5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10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제안이유

- 김포시 초등학생에게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균형있는 교육복지 지원과 공교육 활성화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 목적 및 용어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신청 자격 및 지원절차 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환수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·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수반사항 : 별첨(비용추계서)
- 라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1. 9. 15. ~ 2021. 9. 27.(12일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 - 2) 부서협의결과
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- 가) 중앙부처 :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
 - 나) 경 기도 :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

김포시 생애최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김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입학 축하금”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
2. “초등학교 등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관련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, 그 밖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.
3. “입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5. “지역화폐”란 「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내용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 단, 외국인의 경우 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자중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 자격)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하여야 한다

제6조(지원 절차)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

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,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.

제7조(환수)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실·과·소장 성 명	교육청소년과장 이 경 희
	팀 장 직위·성명	교육정책팀장 한 훈 지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교육정책팀장 한 훈 지 (☎2576)